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7/ 30 통권 173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상법 개정(안)에 대한 G20/OECD관점의 탐론 (2)
-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세무상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 국세청 명의 메일 문자, 진짜인가요
- 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2024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비영리법인이 지자체에 회계교육용역 제공 후 운영비 인건비 해당액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p.13)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개인·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표준세율 + 중과세율>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 경우(교육세·농특세 등 추가)	최종취득세율	
	개인	법인
주택 취득(6억까지 1%, 6~9억 1~3%, 9억 초과 3% -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3%	12%
2주택 취득(표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 2배(4%) - 비조정지역은 3주택까지)	8%	12%
3주택 이상 취득 (법인 : 표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 4배(8%) = 12% - 비조정지역은 4주택까지)	12%	12%
주택무상취득인 경우(3억 미만이면 3.5%)	12%	12%
비주택 일반 건물의 일반 취득(시행령 26 도시형 업종)	4%	4%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신증축·공장 신·증설 : 표준 4% + 중과 2배(4%)	-	8%
대도시 내(수도권 위성도시 포함) 법인설립 지점설치, 공장 신증설(표준세율의 3배 - 중과세율의 2배)	-	8%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제외(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의료업, 공공주택임대사업 등)	-	4%
대도시 내 지점, 분사무소 설치 후 5년 내 취득등기(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율의 2배) 5년 후는 4%	-	8%
대도시 밖에서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	-	4%
대도시 밖 본점, 주사무소, 지점의 대도시내 전입(표준세율의 3배 ⊖ 중과세율의 2배)	-	8%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오락장 등 : 표준세율 4% + 중과세율 4배(8%)	12%	12%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진조세정보  
02-829-7575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5년 7월 30일 (수) · 주간제31호 · 통권 제1738호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38호 / 주간 31호

2025. 7. 30.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개인·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표준세율 + 증과세율	표지
CEO의 경영산책	상법 개정(안)에 대한 G20/OECD관점의 담론(2)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세금계산서 취소에 따른 세금신고 및 납부 방법	5
	-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경우 세법상 처리 문의	6
	- 미국인에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3천불 기준 관련 문의 - 국내매입 자산의 해외 자매회사 재 판매에 따른 기 공제받은 매입부가세의 세무문제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세무상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방향	9
	- ISA, IRP, 연금저축펀드 비교	10
직장인 Survival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좋아지는 이유 5가지	11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환환(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규국조-560, 2024.11.18)	1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소득-2019, 2024.06.27)	13
	국세청, '극한 집중호우' 집중세정지원...9개월까지 신고·납부 연장	14
세정 뉴스와 해설	국세청, '극한 집중호우' 집중세정지원...9개월까지 신고·납부 연장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비영리법인이 지자체에 회계교육용역 제공 후 운영비 인건비 해당액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13
세무정보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15
	- 2024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20
	- 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27
경영정보	-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30
	-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34
	-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 지급 시작	39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26

# 상법 개정(안)에 대한 G20/OECD관점의 담론(2)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भाग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 ● 배경

2025년 6월 5일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 강화(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일부 기업의 일방적 ‘쪼개기 상장’, 불합리한 합병 비율 산정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게 사실이나 이번 상법 개정안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핀셋 규제’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저성장 탈출을 주도해야 할 우리 기업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일이 될 수 있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더 센 상법 개정안.. “제2의 IMF” “실용적 시장주의”와 맞나, 2025. 6. 7 동아일보 사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 지배구조를 거시적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의 성격과 정도를 식별하고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개혁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G20/OECD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방법론은 국제적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우리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관점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이행평가\*

\* OECD(2025), Methodology for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5,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0996ea9-en>, pp.8-10. 분석 요약 인용함.

G20/OECD 기업지배구조 이행평가 원칙은 결과 지향적 (outcome-oriented)이다. 개별 원칙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법적 프레임워크와 기타 시행 조치, 집행(enforcement), 기업

관행(corporate practices), 시장의 기능(functioning of markets)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는 법률, 규제, 판례나 사법적 결정을 통해 정의된 기준(standards), 규범과 원칙(codes and principles) 및 비즈니스 관행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은 각 국가의 특정 상황, 역사 및 전통의 결과이므로 바람직한 조합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원칙이 각 국가에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정보 출처를 기반으로 정보에 기초한 판단(informed judgement)의 문제이다.

평가방법은 기본적으로 질적(qualitative) 접근방식이다. 방법론은 특정 정량적 측정(예: 회사 피라미드 구조)을 고려할 수 있지만, 평가를 정량적 점수나 정량적 점수 집합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 평가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방법론은 금융안정위원회(FSB) 주요 표준, 세계은행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평가 척도를 고려하였다. 각 원칙에 대해 "필수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실행 평가를 위해 심사자가 원칙의 결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능적 동등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필수기준은 평가자(또는 자기 평가자)가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가장 필요한 질문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질문의 형태로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필수 기준은 평가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실제 결과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 체계와 기준 적용에 대한 지침은 표 1 Summary of assessment scheme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Summary of assessment scheme**

구분	적 용
Fully Implemented	모든 적용 가능한 필수기준이 중요성 측면에서 구현되는 경우, 요구되거나 장려되어야 하는 기준(standards)(예: 코드 권고안 또는 시장 기반 인센티브를 통해) 또는 반대로 금지되거나 권장되어야 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경우, 기준에 대한 중요성 측면이 존재한다. 필수기준이 기업 지배구조 관행(corporate governance practice)을 의미하는 경우, 관련 관행은 널리 퍼져 있다. 필수기준이 집행메커니즘(enforcement mechanisms)을 의미하는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이 있다. 필수기준이 구제책을 의미하는 경우,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접근 가능한 구제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roadly Implemented	광범위하게 시행된 평가는 중요성 측면에서 적용 가능한 필수 기준 중 하나 이상이 완전히 시행되지 않은 경우, 최소한 다음 사항은 구현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해당 필수기준이 어느 정도 구현되었다</li> <li>● 표준의 핵심 요소가 존재한다(예: 특정 세부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표준이 있을 수 있음)</li> <li>● 인센티브 및 또는 징계 조치는 중요 기업을 포함한 대부분 시장 참여자가 권장 관행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li> </ul>

Partly Implemented	<p>부분적으로 구현된 평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의 해당 필수 기준에 설명된 표준의 핵심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누락되었지만, 다른 해당 필수기준은 중요성 측면(기업 지배구조 관행, 집행 메커니즘 및 구제책과 관련된 필수 기준의 측면을 포함하여)에서 완전히 또는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li> <li>● 모든 해당 필수기준에 설명된 표준의 핵심요소는 존재하지만, 적어도 소수의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권장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또는 징계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li> <li>● 모든 해당 필수 기준에 설명된 표준의 핵심요소가 존재하지만, 일부 또는 전부가 새로운 표준이기 때문에 구현 수준이 낮다.</li> </ul>
Not Implemented	<p>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는 경우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필수 기준의 대부분에서 표준의 핵심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li> <li>● 적어도 소수의 주요 시장 참여자들이 권장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또는 징계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li> </ul>
Not Applicable	<p>원칙(또는 필수 기준 중 하나)이 구조적, 법적 또는 제도적 특성(예: 신탁 자격으로 행동하는 기관 투자자)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p>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는 검토자가 제시한 이유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Partly Implemented인 경우 부분적인 시행이 주로 불충분한 법적 프레임워크, 당국의 부실한 집행(poor enforcement by the authorities), 민간 보상 메커니즘의 부족(lack of or inefficient private redress mechanisms) 또는 비효율성, 약한 시장 메커니즘(weak market mechanisms)또는 제한된 민간부문 관찰(limited private sector observance,)또는 이들의 복합적 작용인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 상법 개정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 ( 예: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집중 투표제)에 대해 국회의 입법 처리 이전에 상기한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세금계산서 취소에 따른 세금신고 및 납부 방법

Q

<배경>

1. 당사는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업체로,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2. 2025년 3월에 당사의 공급업체가 공급시기오류의 사유로 기 발행된 작성일자 2024년 12월 발행 세금계산서(당사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해당 상황일 때, 당사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과다환급 가산세? 등의 항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산세가 있다고 하면, 수정신고를 할 시에 과다 환급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납부를 하나요? 배경에서 설명드렸듯이 매월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다보니, 부가가치세 납부의 경험이 없습니다.

A

1. 당초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다면 귀사의 경우 초과환급신고가 된 것이므로 초과환급신고가 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계산하여 추가납부세액과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경우 세법상 처리 문의

Q

국세청Q&A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Q.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A.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업무부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팀-364(2008.02.29)

당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해마다 dc로 지급하고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과는 무관한 것이지요? 즉 무관하지 않고 위 사례대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하면

해마다 다시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당해에 기 지급한 모든 퇴직금을 소급하여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인지요?

**A** 임직원의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금액은 임직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국세청유권해석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 미국인에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3천불 기준 관련 문의

**Q** 미국인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 5천불인 경우

1. 조세조약에 따라 연간 3천불을 초과하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를 징수해야 하는데 이때 22%의 세율을 총 지급액인 5천불 전액에 적용해야 하는지, 3천불 초과분인 2천불에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항공료 실비를 추가로 미국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지급액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1.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총 지급액에 22% 이므로, 전체 5천불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항공료는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국내매입 자산의 해외 자매회사 재 판매에 따른 기 공제받은 매입부가세의 세무문제

**Q** 회사 생산사용 목적으로 장비입찰을 통해 낙찰 받고 현재 건설중인 자산으로 기록된 자산이 있습니다. 이후, 해외 자매회사로 이전 결정이 내려졌고, 그간의 모든 비용 및 장비 가격을 해외 자매 회사로부터 청구 받기로 했습니다. 장비입찰 시, 국내 Bidding 업체를 통해, 장비가격+ 낙찰 성공에 따른 수수료 등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었는데, 결과적으로 단순 구매대행 형태로 비취질 수 있을 거 같아서, 기 공제 받은 매입부가세에 대해 세무적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지요?

**A** 국내매입자산을 해외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귀사가 해외 자매회사의 단순 구매대행 인지의 여부 및 기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과세회피 여부 등의 세무상 쟁점여부는 과세당국에서 사실판

# 매출에누리·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세무상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기업은 매출증대와 발생한 매출의 조기 대금회수 등을 위해 여러 가지 거래방법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 매출에누리의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매출에누리는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시점부터 매출가액의 일부를 감액해주거나 판매물품의 수량 부족이나 품질의 불량·파손 등의 이유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을 의미 하는데, 일반기업에게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5에서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매출에누리는 비용의 발생이 아닌 매출의 조정항목의 성격을 가지게 되며, 회계상으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실무상으로는 매출에누리가 발생되면 해당 금액을 매출에누리 계정으로 반영한 후 기말결산시에는 매출에누리 계정 총액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액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면 된다. 즉, 기말 결산시 매출에누리계정의 차변잔액을 매출계정의 차변에 대체하게 된다.

기업회계상 매출에누리를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도 매출에누리는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소득세법에는 매출에누리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공급가액에 매출에누리를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발생한 에누리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감액을 수반시키게 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① 거래시점부터 감액해주는 경우

(개당 100원짜리 제품을 12개 판매하면서 10개 대금만 받기로 한 경우)

차) 매출채권	1,100	대) 매출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

② 제품판매후 불량발생하여 감액하기로 한 경우

▶ 제품판매시

차) 매출채권	1,100	대) 매출	1,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

▶ 제품불량에 따라 매출에누리 인식

차) 매출에누리	200	대) 매출채권	220
부가가치세예수금	20		

▶ 결산시

차) 매출	200	대) 매출에누리	200
-------	-----	----------	-----

### 매출할인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상으로 매출할인도 매출에누리와 같이 상품, 제품의 총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의 계산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11)'고 하였으므로 매출할인액은 이자비용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도 매출할인을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매출에누리와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

① 판매시점

차) 매출채권	1,100	대) 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② 회수시점(조기수금에 따라 할인)

차) 현금	1,045	대) 매출채권	1,100
매출할인	50		
부가세예수금	5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방향

법인세	인하분 원상복구 2022년 1%p 인하된 최고세율 다시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원상복구 윤석열 정부 당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다시 하향 조정
증권거래세	인하분 원상복구 윤석열 정부 당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 다시 인상
감액배당	과세

\*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 전망

### 화

#### 주요국 소액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현황

미국	중국, 홍콩발 소액 직구 상품(800달러 이하)에 대한 면세 폐지
유럽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에 부가가치세 부과(2021년 7월)</li> <li>• 150유로 미만 저가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추진</li> <li>• 소포 1건당 2유로 고정 수수료 신설 추진</li> </ul>
영국	135파운드 이하 소액직구 상품 면세 폐지(2021년 1월)
중국	소액직구 상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2016년)



## ISA, IRP, 연금저축펀드 비교

구분	ISA	IRP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만기 60일 이내 연금저축펀드 및 IRP 계좌로 이체 시 전환 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펀드 합산 연간 900만원 (연봉 5500만원 이상 13.2%, 5500만원 이하 16.5%)	연간 600만원 (연봉 5500만원 이상 13.2%, 5500만원 이하 16.5%)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연금저축펀드 합산 연간 1800만원	IRP합산 연간 1800만원
세율	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이상 : 9.9%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3.3-5.5% (만 55-69세 : 5.5%, 만 70세-79세 : 4.4%, 만 80세 이상 : 3.3%) 퇴직소득세 3-40% 절세	연금소득세 3.3-5.5% (만 55-69세 : 5.5%, 만 70-79세 : 4.4%, 만 80세 이상 : 3.3%)
과세이연	계좌 만기 시까지(만기 연장 가능)	연금 수령 시까지	연금 수령 시까지
분리과세	200만원 이상	연간 1500만원 한도	연간 1500만원 한도
중도인출	자유	특정 사유 외 세제혜택 반환	특정 사유 외 세제혜택 반환
위험자산비중	100% 투자 가능	70% 투자 제한 (30%는 안전자산으로 구성)	100% 투자 가능



## '부동산 대책' 전망

신도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200% → 300-350%
그린벨트 부분 해제	환경 가치 낮은 등급(3등급 이하)부터 단계적 해제
유휴 국공유지 개발	서울시와 함께 추가 개발 후보지 발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용적률·건폐율 상향,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조기 도입,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설치
기존 대책 후보지 재검토	2020년 '8.4 공급 대책'에서 무산된 후보지(태릉CC·용산캠프킴·서울의료원 등)재추진 검토



##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업무성과가 좋아지는 이유 5가지

### 1. 자존감은 '존재에 대한 믿음', 자기효능감은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더 많은 '시도'를 이끌어냅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일에 대해 '망설이기보단 먼저 해보는' 태도를 가집니다. 도전의 빈도가 많아지면, 당연히 기회도 성과도 따라옵니다. 반대로 효능감이 낮으면 시도조차 꺼리게 되죠.

### 2. 문제 상황에서 '포기'보다 '해결'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이건 풀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끝까지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죠. 결국 이는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 3. 집중력과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이건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야"라는 믿음은 업무에 대한 주의 집중을 높여줍니다. 불안과 의심이 줄어들면, 몰입 상태에 빠지기 쉬워지고 일의 퀄리티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 4.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기준'에 충실합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 평가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과 목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좋고, 자발적인 책임감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 5. 반복되는 성공 경험이 선순환을 만듭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자기효능감이 더 높아지고, 이는 다시 도전과 성과를 부릅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자기효능감'이며, 이는 곧 직무성과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 최신 판례 예규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 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규국조-560, 2024. 11. 18

## ■ 질 의

-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제품 저장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위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보관 및 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위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내지 간주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 ■ 회 신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A법인')과 석유제품에 관한 저장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A법인은 위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보세구역 내 A법인 자신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에 저장·보관하면서 싱가포르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석유를 단순 혼합('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위 싱가포르 법인은 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을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A법인과 A법인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는 위 싱가포르 법인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

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서면법규법인-3944, 2024. 11. 21

## ■ 질 의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 사무 수탁 시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24.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24. 11. 6.

<질의내용>

PFV의 자산관리회사의 지위에서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해당 PFV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6호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제1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제2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함

<회신내용>

제1안(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타당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소득-2019, 2024.06.27

**질 의**

- '24.7.19. 시행 예정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고
  - \*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은 관리기관은 국채 증권 매수 등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야 함
  -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의 이용료(이하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질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의 소득구분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24.7.19.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이하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이용료(이하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비영리법인이 지자체에 회계교육용역 제공 후 운영비 인건비 해당액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508, 2024.08.22

**질 의**

-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행정사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2024년 경로당 방문 회계교육' 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극한 집중호우' 집중세정지원... 9개월까지 신고·납부 연장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증명·등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으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통지받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 확산... 작년보다 3배 더 이용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이 지급됐다.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 516명의 약 3배 수준으로,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2000만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 4억8000만원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를 지원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 지원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1년 480만원)을 지원받고,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1년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유연근무를 활용한 근로자들은 자녀 돌봄에 한결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 2025. 7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특히, 7.25.까지 '25.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 \* '25.1기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
  -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⑥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 (신청방법) ① 국세청 누리집 → ② 사전 정보 공표 → ③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 → ④ 세무조사 가이드북 → ⑤ 전체서식 다운받기 → ⑥연기 또는 중지신청서 작성 후 관할세무서 제출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text{▶ 재해상실비율} = \frac{\text{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text{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발생일이 '25.7.17.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25.10.17.까지 신청하면 체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 '25년 귀속 법인세는 '26.3.31.까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6.6.1.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⑥ '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금융회사등·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

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 참고 2

### 신고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참고 3

###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참고 4****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

-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참고 5**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구분	홈택스 화면
<p>① 홈택스 접속 - '증명·등록·신청' 선택</p>	
<p>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선택</p>	
<p>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선택</p>	

# 2024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 국세청, 2025. 7

●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

-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 ②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기준시가 12억원과 지분율 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 ②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사례

주 택	김국세(본인)	박타인(제3자)	최삼자(제3자)
서울 ○○구 ○○동	20%	80%	-
부산 ○○구 ○○동	49%	-	51%
대구 ○○구 ○○동	49%	51%	-
인천 ○○구 ○○동	20%	40%	40%

⇒ 김국세는 4채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모두 소수지분으로 과세대상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주택 수 0채)

\* 박타인 3채, 최삼자 2채(인천 주택은 박타인과 최삼자의 주택 수에 모두 포함)

※ 단, 주택별로 김국세에게 귀속되는 임대수입금액이 6백만원 이상인 주택이 있거나 부산과 대구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은 김국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2024년 세액비교)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사례

※ 아래 사례는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세액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대상 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금액도 포함됩니다.)

-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조건】

- 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 ②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음 &
- ③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 없음

⇒ 종합과세 시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세율 14%)보다 유리하거나 같음

【계산사례】

- ①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0원
- ②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하지 않음
- ③ 주택임대 업종 : 일반주택임대(701102)
- ④ 연간 임대수입금액 : 2천만원
- ⑤ 주택임대 종합과세시 신고방법: 단순경비율(42.6%)
- ⑥ 종합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
- ⑦ 세액공제감면 :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

⇒ 종합과세 결정세액 528,800원 < 분리과세 결정세액 1,120,000원

구 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0,000	0	20,000,000
주택임대 필요경비	× 20,000,000 = 42.6%		× 50% = 10,000,000
주택임대 소득금액	- 20,000,000 = 8,520,000 = 11,480,000		
종합소득 금액	+ 11,480,000 = 0 = 11,480,000	0	- 10,000,000 = 2,000,000 = 8,000,000
과세표준	- 11,480,000 = 1,500,000 = 9,980,000	0	
산출세액	× 9,980,000 = 6% = 598,800	0	× 8,000,000 = 14% = 1,120,000
감면공제세액	70,000	0	0
결정세액	- 598,800 = 70,000 = 528,800	0	1,120,000
결정세액 합계	528,800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I)

**【조건】**

- 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 &
  - ②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
  - ③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60%)와 공제금액 (4백만원) 우대가 적용
- ⇒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음

**【계산사례】**

- ① 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8백만원
  - ②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2024년 계속해서 모두 등록
  -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 5% 이하
  - ④ 주택임대 업종 : 일반주택임대(701102)
  - ⑤ 연간 수입금액 : 1천만원
  - ⑥ 주택임대 종합과세시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42.6%)
  - ⑦ 종합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
  - ⑧ 세액공제감면 :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
- ⇒ 종합과세 결정세액 506,000원 > 분리과세 결정세액 320,000원

구 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		10,000,000		10,000,000	
주택임대 필요경비	×	42.60%	0	×	60%
	=	4,260,000		=	6,000,000
주택임대 소득금액	-	4,260,000			
	=	5,740,000		10,000,000	
종합소득 금액		5,740,000	0	-	6,000,000
	+	8,000,000	+ 8,000,000	-	4,000,000
	=	13,740,000	= 8,000,000	=	0
과세표준		13,740,000	8,000,000		
	-	1,500,000	- 1,500,000		
	=	12,240,000	= 6,500,000		
산출세액	×	15%	×	×	14%
	=	576,000	= 390,000	=	0
감면공제세 액		70,000	70,000		0
결정세액		576,000	390,000		0
	-	70,000	- 70,000		
	=	506,000	= 320,000		
결정세액 합계		506,000			320,000

-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II)

**【조건】**

- 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4백만원 이하 &
- ②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소득금액과 세액이 없으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701101~701104, 701301)  
 이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거나 같음

**【계산사례】**

- ① 주주택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8백만원
- ② 세무사와 지자체 사업자등록 : 모두 등록하지 않음
- ③ 주택임대 업종 : 일반주택임대(701102)
- ④ 연간 수입금액 : 4백만원
- ⑤ 주택임대 종합과세시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42.6%)
- ⑥ 종합소득공제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적용
- ⑦ 세액공제감면 :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  
 ⇒ 종합과세 결정세액 457,760원 > 분리과세 결정세액 320,000원

구 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수 입금액		4,000,000		4,000,000	
주택임대 필요경비	×	4,000,000	0	×	4,000,000
	=	1,704,000		=	2,000,000
주택임대 소득금액	-	4,000,000			
	=	2,296,000			
종합소득 금액		2,296,000	0	4,000,000	
	+	8,000,000	+ 8,000,000	- 2,000,000	
	=	10,296,000	= 8,000,000	- 2,000,000	
과세표준		10,296,000	8,000,000	= 0	
	-	1,500,000	- 1,500,000		
	=	8,796,000	= 6,500,000		
산출세액		8,796,000	6,500,000	0	

	×	6%	×	6%	×	14%
	=	527,760	=	390,000	=	0
감면공제 세액		70,000		70,000		0
결정세액	-	527,760	-	390,000	-	0
	=	70,000	=	70,000		
	=	457,760	=	320,000		
결정세액 합계		457,760		320,000		

●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인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공제금액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필요경비율 : 미등록 50%→등록 60%

2) 공제금액 : 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

3)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

-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세액 비교

구 분	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②(① 이외의 경우)
	장기(8·10년 이상)	단기(4년 이상)	
총수입금액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필요경비 (-)	1,200만원 (60%)	1,200만원 (60%)	1,000만원 (50%)
공제금액 (-)	400만원	400만원	200만원
과세표준 (=)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
세율 (×)	14%	14%	14%
산출세액 (=)	56만원	56만원	112만원
세액감면 (-)	42만원 (75%)	16.8만원 (30%)	0원
결정세액 (=)	14만원	39.2만원	112만원

**[가정]**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 이하
- ①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한 경우로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혜택요건과 감면요건 충족
  - ⇒ 사업자등록 등 우대요건을 충족한 경우 결정세액은 14만원(장기), 39.2만원(단기)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112만원 보다 유리(소득세만 비교한 결과임)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7월 18일 (금)	7월 21일 (월)	7월 22일 (화)	7월 23일 (수)	7월 24일 (목)
미 달 러 (USD)	1390.80	1391.90	1391.10	1386.30	1379.10
일 본 엔 (JPY)	937.73	936.64	943.66	945.02	941.94
영 국 파 운 드 (GBP)	1868.19	1866.82	1876.45	1875.11	1873.37
캐 나 다 달 러 (CAD)	1012.23	1013.91	1016.89	1019.00	1013.90
홍 콩 달 러 (HKD)	177.21	177.35	177.22	176.60	175.69
위 안 화 (CNH)	193.66	193.63	193.81	193.11	192.37
유 로 화 (EUR)	1615.76	1618.29	1626.82	1628.63	1623.89
호 주 달 러 (AUD)	903.60	905.85	907.62	908.44	910.69
싱 가 폴 달 러 (SGD)	1082.12	1082.90	1086.50	1084.36	1080.5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7.52	327.81	328.44	327.61	326.22

# 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 국세청, 2025. 7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7.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6. 3.~ 6. 23.까지 국민, 업계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 완료

##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전	개정 후
<b>1. 주류시장 진입여건 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li> <li>②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 탁·약·청·맥주 및 과실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납세병마개 제조자 등록제</li> <li>②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 확대 (개정 전) + 위스키·브랜드·증류식소주</li> </ul>
<b>2. 제조자 납세협력비용 감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주류 용도 구분 의무 제외 대상 캔·케그·100ml 이하 용기 주류</li> <li>④ 위스키 등에 RFID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주류 용도 구분 의무 제외 대상 확대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표기 폐지</li> <li>④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위스키 등에 RFID 적용</li> </ul>
<b>3. 주류산업 수출지원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lt; 신 설 &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국산 위스키·브랜드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기간 확인</li> </ul>
<b>4. 주류제조 안전관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주류 제조장과 분리 시설 화장실,합숙소,식당,폐기물처리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주류 제조장과 분리 시설 추가 (개정 전) + 교육장, 판매장소</li> </ul>

### 1 주류시장 진입여건 완화

- 국세청이 제조장의 시설요건을 검토하여 지정·고시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일정한 시설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하여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확대\*하여 다양한 업체들의 상시 진입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안)을 기재부에 건의, 2.28. 개정·시행

- ①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안정적인 공급, 품질개선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등록 요건, 절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②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 위스키, 브랜드 및 증류식소주의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허용에 따라 청년 창업자 등의 시장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관리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담금조) 5kl이상→1kl이상 5kl미만, (저장조 등) 25kl이상→5kl이상 25kl미만

## 2 주류제조자 납세협력비용 감축

○ 예전과 달라진 주류 소비문화의 현실을 반영하여 주류제조자의 생산·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류 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류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 ③ 주로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종이팩·페트병 용기 소주·맥주의 ‘가정용’ 용도 구분 의무를 폐지하여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였습니다.
- ④ 위스키 등에 적용되는 RFID\* 태그 부착 의무를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스키 등에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주류 소비문화의 변화로 대중화된 하이볼 등 저도주류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주파수 인식) : 유통 단계별 추적, 가짜양주 식별

\*\* 통상적으로 증류주류에 비해 도수가 낮은 발효주류의 알코올 도수는 17도 미만임을 감안

## 3 주류산업 수출지원 확대

○ 지난 해 국산 위스키 제조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해 수집한 수출 시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신력 있는 우리 술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술(K-SUUL)의 해외 신뢰도와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 ⑤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드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 우리나라의 위스키·브랜디 숙성기간은 1년 이상, 스코틀랜드·아일랜드 등은 3년 이상

#### 4 주류제조 안전관리 강화

- 주류 제조 관련 체험·교육 및 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류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수 : ('20년) 277개 → ('24년) 413개, 49.1%
- ⑥ 체험·교육·판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양조장의 안전한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 판매장소를 주류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하고 제조 공간과의 분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 관계 부처와의 협의·연계 등을 통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여 주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금융위원회, 2025. 7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상향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5.7.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9.1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산림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9.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올해 9.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

예금보호한도를 '01년 이후 24년만에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예금

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관계기관(금감원·한은·예보)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 9.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하여 '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황을 위해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납부 중(~'27년말)

## 참고.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 【보호대상 금융기관 · 금융상품】

#### 1.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아래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 국내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은행 · 보험 · 증권 등) 국내지점 포함

- ②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2.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예금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보호됩니다.

\* 예 · 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 퇴직연금(DC형·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됩니다.

※ (예)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 5천만원이 ①예금(보호상품) 7천만원, ②주식·채권 혼합형 펀드(비보호상품) 8천만원으로 운용되는 경우 → 예금으로 운용되는 7천만원만 보호

< 보호상품 확인 홈페이지 (PC기준)>

- ①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제도 · 정책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② 상호금융 중앙회
  - 신협 : 신협중앙회 홈페이지 - 개인뱅킹 - 예금 - 예금자보호제도안내 - 보호예금등록부
  - 농협 :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홈페이지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수협 :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 수협 소개 -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대상 및 한도
  -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산림조합소개-금융업무-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보호대상 및 한도
  -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 새마을금고 - 예금자보호제도안내 - 보호대상 및 한도

3.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을 제외한 주계약 등

4. 외화예금도 보호되나요?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1억원까지 보호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한도 적용】**

5. '25.9.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25.9.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언제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25.9.1일 이후부터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6.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되나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① (예보·신협·새마을금고) 가입상품의 약정이율과 예보·중앙회가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  
- (예)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은행·저축은행)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②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전체 조합 예금 등의 평균 이자율 고려)

○ 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의 예·적금은 예·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 까지 보호됩니다.

○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

를 합하여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7. 금융기관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경우에 1억원까지 보호하나요?**

- 금융기관이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 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8.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예금자가 한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 3개 계좌에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 총 예금 1억 2천만원 중 1억원 보호

**9.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적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에 9천만원, B은행에 8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각각 전부 보호

**10.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보호한도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아래 상품들은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①,②,③ 각 1억원)
    - ① DC형 · 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 ②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공제)
    - ③ 사고보험금\* (사고공제금)
- \* 영업정지 등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미지급된 사고보험금  
※ (예) 예금자 홍길동이 A은행에 ①예금 6천만원, ②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원, ③DC형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한 경우 → ①예금 6천만원, ②연금저축신탁 1억원, ③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억원 각각 보호

#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금융위원회, 2025. 7

7.13일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7.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하여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해피해상황을 지속 공유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 별첨 -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

### 1 지원 내용

#### 가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금융권\*(은행·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  
니다.

- \* ①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
-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상호금융업권(예시) >

-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 : 피해 개인 대상(최대 2천만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  
원 등
- 하나은행 :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최대 5천만원) 지원 등
- 농협은행 :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피해액 범위내 최대 1억원) 지원 등
- 기업은행 :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등
- 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3천만원) 지원
- 수협 : 피해 입점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지원

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은행권(예시) >

- 국민은행 : 만기연장 지원(최고 1.5%p내 우대금리 제공) 및 연체이자 면제\*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납입 限
- 신한은행 : 만기연장 지원(최고 1.5%p내 우대금리 제공) 및 연체이자 면제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 우리·하나·경남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금리우대(최고 1.0%), 상환유예 지원 등
- 농협은행 : 만기연장,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 기업은행 : 만기연장(최대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등
- 부산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 지원 등
- 카카오뱅크 : 신용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 토스뱅크 : 기존대출 상환유예

< 카드사(예시) >

- 쏠카드사 : 최대 6개월 청구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 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연장
- 신한카드 : 청구유예 후 6개월 분할상환 지원

< 상호금융업권(예시) >

-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수협 : 분할상환원금 또는 이자일부 상환유예(만기이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 생보·손보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 \*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합니다.
  - \*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보장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④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 \*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iM뱅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 \*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⑤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 나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 ①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은·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
- 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100%, 보증한도 5억원)
-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 피해상인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최대 5억원) 및 특별우대금리 제공

### ②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저축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 \*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4p 기관별 연락처 참조)
-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 농어업인 등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 ③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 금번 수해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20.4월 ~ '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대상

## 2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각 지원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입니다.
  -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3 유의사항

- ①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http://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②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③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 지급 시작

- 행정안전부, 2025. 7

-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 지원대상 및 규모 >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 신청 및 지급 >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 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 제외

□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 총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국 저축은행(체크카드 취급점) 및 농협, 축협, 신협

○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 알림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

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금)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7월 14일(월)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7월 19일(토)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할 예정이다.

### < 사용업종 및 지역 >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 부착 예정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약 125개소).

○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요건인 매출액 기준과 동일

-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인 지역

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방식 등)하는 경우 사용 가능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 이의신청 및 신속 처리 >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 2. 2차 지급 추진 방향

- 한편,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되어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 \* 국민콜110 가동(7.14.~),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구축 예정(7월중)
  - 특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

※ (신용·체크·선불카드 참여사)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처
  - 연매출액30억원이하소상공인업종(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등)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면(面) 지역 하나로마트 일부
  - 의무복무 군인이 나라사랑카드(KB, BC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사용지역 관계없이 PX 허용
- 사용 제한 업종

연번	업종	브랜드
1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li> <li>• 기업형 슈퍼마켓 :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롯데슈퍼, 롯데마켓999, 지에스 더 프레시, 김스클럽, 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li> <li>• 창고형 매장 :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li> </ul>
2	백화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등</li> </ul>
3	온라인 전자상거래(PG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li> </ul>
4	대형 외국계 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li> </ul>
5	프랜차이즈 직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벅스(직영 100%) 등 직영 형태의 프랜차이즈 매장</li> </ul>
6	대형전자판매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등</li> </ul>

7	유흥업종	•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8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9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점
10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11	비소비성 지출	• 세금 : 국세, 지방세, 관세 •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 •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액 등
12	면세점 업종	롯데, 현대, 신세계, 신라, 동화, 제주 등
13	보험업(4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14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 붙임 2. 스미싱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① 스미싱 피해예방 요령

- 정부, 카드사 및 지역화폐사 등은 온라인 신청 시 문자메시지를 악용하는 개인정보 피해(스미싱)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께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시기와 맞물려 정부나 카드사 등을 사칭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금액, 카드 사용 승인, 충전 등 안내 정보를 가장하여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앱 설치 유도)하는 스미싱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정부 및 카드사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께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 유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는 절대 클릭 하지 마세요.
- ②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센터(☎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관련 주요 Q&A

### 1.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동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2.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시·군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기준일(6.18.)기준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대구(총1개)	군위군
인천(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구감소지역(총 89개)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개) 제외

### 3. 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살고있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모르겠습니

### 다.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 (<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 \*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 지급 신청일(7.21.) 이틀 전인 7.19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4.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5.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6.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마감 시한인 9월 12일(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8.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 ※ ‘찾아가는 신청’의 구체적 일정·절차 및 접수처는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안내 예정

## 9.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7.2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가편결제·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7.21.(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예시)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

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10.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7.21.(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 7.2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1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12.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1.30.(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1.30.(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됩니다.
    -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도 11.30.(금)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